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861호
- 나. 제안자 : 김영철 의원 (찬성의원 25명)
- 다. 제안일 : 2024. 5. 27.
- 라. 회부일 : 2024. 5. 30.

2.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 제·개정에 따른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명시하고, 청년자율예산 운영 상의 회계원칙과 예산편성절차 등을 확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 '정책결정과정'을 추가 규정하여 실질적인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도모함 (안 제1조)
- 나. '예산·회계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다. 시장예산편성권, 의회 예산안 심의권 등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미래청년기획단) : 원안 가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정책결정과정으로 확대하여 명시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율예산 운영 시 회계원칙과 예산편성절차 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2조(총회) ① (생략)</p> <p>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p> <p>③ ~ ⑤ (생략)</p> <p>⑥ 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을 _____ _____ _____.</p> <p>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12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정하고, 회의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나. 검토 내용

(1)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시청참여 보장 범위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청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과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을 _____ _____ _____.

- 현행 조례는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0월에 제정되었음.
-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례 제정 없이 2019년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시행하였고, 현행 조례는 이를 사후적으로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¹⁾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조례의 목적으로 강조하였음

1) 의안번호 10-01809,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2020. 9. 15.) 참조

- 현행 조례 제정(2020.10.5. 제정·시행) 이후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역할 및 기능, 규모가 확대²⁾되고 있으며, 청년의 시정참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조례의 목적으로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청년자율예산의 법령준수 의무(안 제5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조직이었던 구(舊)청년청이 현(現)미래청년기획단으로 개편되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현(現)미래청년기획단(3·4급)은 확대되는 청년정책의 실행력 제고와 市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하반기 ‘미래청년기획관(3급)’으로 격상될 예정임

현행	개정안
<p>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예산편성과정에 청년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p> <p><u><신설></u></p>	<p>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청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해 규정된 법령과 회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u></p>

-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3)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청년자율예산제도’ 운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과 규정, 회계원칙 등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자율예산’ 편성과정의 절차위반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⁴⁾ ‘청년자율예산’의 법령과 회계원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3)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 12. 01. 금) ‘청년자율예산’ 사업 중 하나인 ‘서울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예산결산위원회 박수빈 의원 지적사항)

(3) 청년자율예산 제출 절차 등의 정비(안 제1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제6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청년자율예산안의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총회) ① (생략) ② 회의는 정책 개선 및 청년자율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u>회의에서 의결한 청년자율예산편성안은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다.</u>	제12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u>정하고, 회의의 의결을 통해 조정된 예산편성안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과 예산안 제출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2항에서 ‘청년참여기구’ 및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조정된 ‘청년자율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현행 조례가 최초 제정된 '20.10월 이후 변화한 청년정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정책결정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요구에 따라 서울시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와 안 제12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하나인 ‘청년자율예산’의 법령준수 의무와 예산안 제출·심의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청년자율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절차 위반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